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]

- 점검일시 : 2017.10.18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윤원섭, 박수엽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중랑천 좌안구간에 작업중인 건설기계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기 바람.

- ① 백호우 버킷 이탈방지 안전핀 설치
- ② 진동로라 장비 실명제 부착 후 관리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, 공통-32(굴삭기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중랑천 좌안 구간 가설도로 진출입부는 덤프 운행 시 후진 후 방향선회를 해야하는 구조로 가설도로 단부에 안전시설이 없어 전도의 우려가 있으니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후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강교조립을 위해 거더 상부에서 근로자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(안전난간, 안전대 걸이시설등) 설치 후 작업 할수 있도록 조치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강교 조립장에 용접기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가스통은 별도의 저장소를 만들어 보관하고 취급근로자들이 쉽게 볼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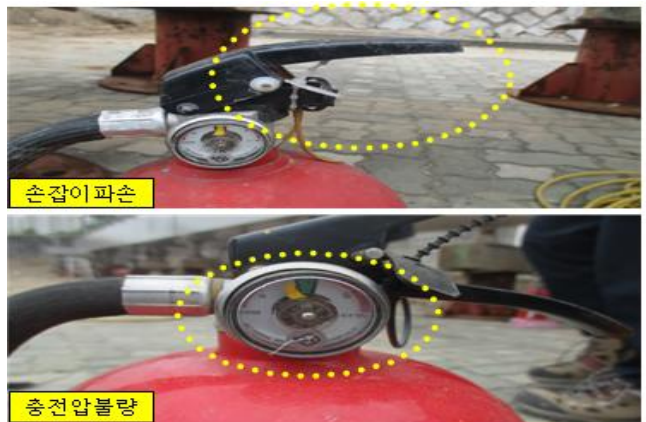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(위험물보관소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정기점검을 통해 파손되거나 충전압이 불량한 소화기가 현장에 비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9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

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강교조립구간에 사용중인 핸드그라인더는 톱날 보호덮개 설치 후 사용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(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강교 조립구간에 사용중인 용접작업용 가설전선은 누전차단기가 아닌 배선용차단기에 연결되어 있으니 누전차단기 연결 후 사용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7(가설전선)

